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303 호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5년 월 일<br>(제 회) |

##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윤 홍 창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15년 11월 23일 |

##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03 |
|----------|-----|

(윤홍창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

발의자 : 윤홍창, 정영수, 김양희,  
이광희, 이숙애, 이종욱,  
임병운

### 1. 제정이유

참여와 개방·공유를 목표로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‘언론’ 및 ‘언론사’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
나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언론을 통하여 시행하는 소통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준용 규정 명시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1)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

2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

나. 정책 토론회 등 공청회 : 2015. 9. 9.

다. 관계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협의 완료

라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마. 입법예고 : 2015. 11. 3. ~ 11. 22.

##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언론”이란 방송, 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.
2. “언론사”란 방송사업자, 신문사업자,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지방보조금”이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부 자금을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충북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보조금 지원)** ① 교육감은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
2.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
3.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·문화·예술·체육 행사
4. 언론을 통한 독서·토론·미디어·진로·현장체험 교육
5.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
6. 그 밖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.

**제5조(준용)**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 발 체

### ■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■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29조(기부·보조의 제한)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교육감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
-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
- 언론을 교육특강 및 학술·문화·예술·체육 행사
- 언론을 통한 독서·토론·미디어·진로·현장체험
-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
-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2. 관련 조문

- 제4조 보조금 지원

## 3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2016년   | 2017년   | 2018년   | 2019년   | 2020년   | 비 고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언론을 통한 교육·학예<br>사업 지원 | 250,800 | 250,800 | 250,800 | 250,800 | 250,800 | 보조금<br>지원 |
| 계                     | 250,800 | 250,800 | 250,800 | 250,800 | 250,800 |           |

나. 재원조달방안 : 자체 재원

## 4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<br>윤홍창 의원 |
| 연락처    | 043-220-5079               |

5. 2016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| 사 업 명                 | 전 체     |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| 국비 | 지방비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| 250,800 | -  | 250,800 |
| 언론을 통한 교육·학예<br>사업 지원 | 250,800 | -  | 250,800 |